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2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서지영 · 김용태 · 김대식  
이인선 · 서천호 · 정성국  
최수진 · 곽규택 · 백종현  
이양수 · 임종득 · 나경원  
김희정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제도·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 칙

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국회운영위원회     가. ~ 아. (생 략)     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u>속하는 사항</u></p> <p>2. 법제사법위원회     가. ~ 바. (생 략) <u>&lt;신 설&gt;</u>     <u>사. · 약.</u> (생 략)</p> <p>3. ~ 17. (생 략) ② (생 략)</p>	<p>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2.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u>     <u>속하는 사항</u>     <u>약. · 자.</u> (현행 사목 및 아목     과 같음)</p> <p>3.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